

# 서울특별시 어린이·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의안번호 : 3194번
- 제 출 자 : 권수정 의원 외 12명
- 제 출 자 : 2022년 5월 24일
- 회 부 일 : 2022년 5월 27일

### 2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개정(2021.4.20. 개정, 2022.4.21. 시행)으로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‘보건위생물품’ 용어가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‘생리용품’으로 변경됨.
- 이에 따라 이 조례상의 ‘위생용품’ 용어를 ‘생리용품’으로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3. 주요내용

- ‘위생용품’ 용어를 ‘생리용품’으로 개정함.(안 제19조제7항)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입법예고(2022.6.2. ~ 6.10.) 결과 : 의견 없음.

## 5. 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개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,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‘위생용품’을 ‘생리용품’으로 개정하려는 것임(제19조 제7항).

### 〈 신규조문대비표 〉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복지에 관한 권리) ① ~ ⑥ (생 략) ⑦ 시장은 여성 어린이·청소년 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 서 <u>위생용품</u> 을 지원할 수 있다.	제19조(복지에 관한 권리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----- ----- -- <u>생리용품</u> -----.

- 서울시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에 속하는 만 9세에서 만 24세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 물품(생리물품)을 지원하고 있음.

※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5조(건강한 성장지원)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.

※ 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」 제3조의2(보건위생물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구원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
  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
  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  4.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생리용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② ~ ⑤ (생략)

○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은 생리용품의 가격 상승, 사회적 배려계층의 청소년들이 부적절한 용품(수건, 운동화 깔창 등)의 사용이 사회적으로 문제(2016년)가 되어,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음.

※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게 된 계기

2016년 생산기업이 생리대 가격을 인상을 예고하자, SNS에서 반대 여론이 일어났고,

- ① 저소득층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생리대를 사달라고 말할 수 없어 신발 깔창에 휴지를 덧대어 생리대로 대신 사용한 일화와
- ②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이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생리기간 중에는 결석하고, 집에서 수건을 깔고 누웠던 사례가 SNS에 소개 및 전파되면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인권 및 건강의 문제가 대두되었음.

○ 사업시행 초기에는 입법미비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별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였고, 법령의 근거가 마련된 후에는 11세~18세 여성 청소년에게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량에 따라 물품지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,

- 현재 법령은 9세~24세 여성청소년 중 ‘특정요건\*’을 갖추고 지원을 요청하는 자’에게 지원하도록(강행규정,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5조제3항) 규정하고 있음.

※ 서울시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추진경위

- 2016. 9월 : 보건(지)소를 통해 의료급여,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,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 이용 청소년에게 현물 지원
- 2018. 1월 : 소관 중앙부처 및 서울시 담당부서 변경(보건복지부 → 여성가족부,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→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)
- 2018. 7월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법정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수급 청소년에게 현물 지원 ⇒ 지원대상 확대
- 2019. 1월 : 현물지급 방식 대체하여 전자바우처 지급방식 도입·시행
- 2022. 4월 : 지급방식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법률 개정(시행 2022.4.21.)

※ 서울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추진개요

- 지원대상 : 만 9~24세의 여성 청소년 중 수급자·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정의 청소년
- 지원금액 : 1인당 월 12,000원
- 대상자수 : 36,283명 (2021년 11월 말, 만 9세~24세 자격기준 해당자)
- 지원방법 :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보건위생용품 구입비용(바우처) 지급
  - 카드형태 : 체크카드, 신용카드, 전용카드(체크카드·신용카드 발급 불가능한 경우)
  - 구매 가능한 품목 :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보건위생물품(일회용생리대, 탐폰, 생리컵 등 약사법 제2조제7호 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)
- 총사업비 : 3,783백만원
  - 국비1,135백만원, 시비1,324백만원, 구비1,324백만원, 국:시:구=30:35:35

- 본 개정안은 여성 청소년의 보건위생에 필요한 용품을 지칭하는 용어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'위생용품'에서 '생리용품'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,
  - 입법취지와 다른 물품의 지원과 입법목적은 왜곡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조금 더 명확한 용어로, 여성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제품을 특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.

- 다만, 「약사법」에서는 생리용품을 ‘생리혈 위생처리 제품’으로 규정하고 있는바, 「약사법」에 따른 명칭 사용에 대해 논의의 여지는 있다고 사료됨.

※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을 지칭한 법령과 조례의 용어

- 법령에서는 ‘보건위생물품’ 또는 ‘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’으로,
- 조례에서는 ‘위생용품’ 등 우회적인 용어를 사용해 왔음.

※ 의약외품 중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

- 「약사법」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

7. “의약외품(醫藥外品)”이란 (중략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.

- 「의약외품 범위 지정」(시행 2020.6.1.,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-48호)

1. 약사법 제2조제7호 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은 다음 각목과 같다.

가.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

- 1) 생리대      2) 탐폰      3) 생리컵      (이하 생략)

- 본 개정안은 「약사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확한 명칭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나, 시민의 언어생활에서는 해당 용품들의 명칭을 명확히 사용하지 않거나, 우회적인 표현으로 해당 제품들을 지칭하고 있고,

- 본 정책의 수혜자가 감수성이 예민한 여성 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, ‘생리혈 위생처리 제품’이라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낙인효과 방지에 도움이 되는지 등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여 얻는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.

- 또한,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뿐만 아니라 「근로기준법」, 「부가가치세법」 등도 ‘생리휴가’, ‘생리 처리 위생용품’, ‘생리기간 중 휴식’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조문의 뜻과 취지를 오인이나 왜곡없이 명확히 전달하고 있으며,

- 본 개정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‘생리용품’을 위생용품(위생물수건, 화장지, 기저귀, 면봉 등) 또는 의약외품(팬티라이너, 구강위생을 위한 제재, 마스크, 해충기피제 등) 등으로 오인할 여지도 적을 것으로 보임.

※ 「근로기준법」 제73조(생리휴가)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.

※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(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)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
#### 4.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

※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.

○ 결론적으로 ‘위생용품’을 ‘생리용품’으로 개정하는 것은 제품을 지칭하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나, 상위법령과의 용어의 일치, 점진적 용어의 명확성 확보, 시민의 언어생활 반영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